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 포항시보

제763호 2010. 1. 12(화)

- 시장지시사항..... 2
- ◀ 훈 령 ▶
- 포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운영규정(제220호) ..... 5
- ◀ 입법예고 ▶
- 포항시 리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0-23호) ..... 8
-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제2010-39호) ..... 22
- ◀ 고 시 ▶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제2010-1호) ..... 23
- ◀ 공 고 ▶
- 주민의 조례제정 및 폐쇄 청구권자 주민총수 공표(제2010-31호) ..... 25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제2010-35호)..... 26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제2010-36호) ..... 27
-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제2010-1호)..... 30

회 람									
--------	--	--	--	--	--	--	--	--	--

## 시장 지시(훈시)사항

- 2010. 1. 11(월) 확대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1. 11)	<p>○ <b>직원들 노고를 치하 드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 많은 노고와 함께 시정 성과도 거양하였음. 2010년은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고, 당초예산의 1조원대, 영일만르네상스를 여는 원년으로 모든 공직자가 새로운 각오로 흔들림 없이 출발해야 할 것임.</li> </ul> <p>○ <b>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역동적인 업무추진 당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가지 조직개편의 취지를 공감하고 세계도시와 경쟁하는 글로벌 마인드 무장 및 변화가 필요함.</li> <li>- 새해는 좀더 크고 열린 시책을 만들어가는 공직 마인드(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져 주시기 바람.</li> <li>- 사회의 고령화는 큰문제인데 시책이 나와야 하고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좋은 안이 나오길 기대함.</li> </ul> <p>○ <b>G20 정상회의 등 손님맞이 준비 철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스코, 포항공대, 첨단R&amp;D에 각국 정상 및 각료 등 손님들이 기간 중 우리시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람.</li> </ul> <p>○ <b>47조원대 한국형 원전수출과 관련 지역기업의 참여 지원 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전 건설은 초대형 규모로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므로 지역기업이 적극 참여되도록 행정적 지원이 되도록 하기 바람.</li> </ul>	<p>전부서</p> <p>전부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p> <p>전부서 (국제협력팀장)</p> <p>전부서 (기업유치과)</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1.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조기집행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회복세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 및 서민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데, 구체적 시행방안을 강구하고 조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li> </ul> </li>   <li>○ 경북도민체전 준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부터 시설물 정비, 선수양성 등을 통하여 의미 있는 도민체전이 되도록 준비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li> </ul> </li>   <li>○ 물회, 쌀동동주 상품 연구 및 홍보 철저</li>   <li>○ 미소금융 관련 대시민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에서 동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시민 홍보 적극 실시바람.</li> </ul> </li>   <li>○ 신년맞이 시내 전역 환경정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조성된 녹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잔디보호용 플라스틱 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토록 하고,</li> <li>- 신년맞이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li> </ul> </li>   <li>○ 산불방지대책 체계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 구청에서는 산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람.</li> </ul> </li>   <li>○ 청사에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설설비 개선하여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할 것.</li> <li>- 포항은 연료전지 메카인데, 연료전지 설치여부를 깊이 연구 및 검토하여 추진</li> </ul> </li> </ul>	<p>전부서 (기획예산과)</p> <p>체육지원과</p> <p>해양수산과 농축산과 주민복지과</p> <p>도시녹지과 테라노바팀 건설과 청소과 (읍면동)</p> <p>남·북구청 (읍면동)</p> <p>재정관리과 녹색성장팀</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직공무원에 대해 전문가라는 인식 필요 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바람.</li> <li>○ 오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관심 갖고 지켜보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세종시 수정안이 오늘 나올 것임.</li> <li>- 관심있게 지켜보고 분석해보고 대비할 것에 대해서는 대비토록 하시기 바람.</li> </ul> </li> </ul>	<p>자치행정과</p> <p>전부서 (기획예산과)</p>
지 시 10-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도 중앙부처 업무보고와 연계한 시책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처별 청와대 업무보고와 연계하여 우리시의 정책·시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2011년 시책도 서둘러 주시기 바람.</li> </ul> </li> </ul>	<p>기획예산과</p>
지 시 10-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도 역점시책 및 주요 시정 등에 대한 대시민 홍보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 홍보는 물론, 읍면동의 각종 회의 및 기회교육 시 간략하면서 쉽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정 홍보 회의자료를 만들어 배부하여 알권리 충족 및 이해를 도모토록 하여 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li> <li>- 특히 읍면동장은 지역 내 예산반영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 이해 및 홍보하기 바람.</li> </ul> </li> </ul>	<p>자치행정과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읍면동)</p>

**훈 령**

포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1월 12일

포항시 훈령 제 220 호

**포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포항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함
2.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초한 차별의 한 형태로서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함

**제3조(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

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포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아동·여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의회 의원
2.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기관
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유형 중 4개 기관유형은 반드시 포함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규정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포항시 차원에서 시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 하기 위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 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4조)
- 나.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다.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과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제15조)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 2010 - 23호

『포항시 리튬반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박승호

2010년 1월 7일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 및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로 리·통·반 구역을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모로 조정하여 사회 및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인적관리는 물론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리·통/반 조정 : 9개 읍면동 2개 통·리, 69개반 증설
- 리·통/반의 조정(안 별표)

읍면동	현행		조정		증감		사유
	리	통반	리	통반	리	통반	
합계	310	2,351	312	2,420	2	69	○ 증 : 통2, 리2, 반 71 ○ 감 : 통1, 리1, 반 2
읍면계	156	1,318	157	1,365	1	47	○ 증 : 리2, 반 48 ○ 감 : 리1, 반 1
연일읍	31	331	31	339	0	8	■ 연일베르체 65세대 기입주(1개반 증) ■ 유강코아루아파트 통로별 조정(5개반 증) ■ 경성홈타운 신축80세대입주(2개반 증)
오천읍	37	444	37	460	0	16	■ 원리 구획정리지구 입주세대(원룸) 증가(16개반 증)
동해면	28	143	28	142	0	△1	■ 도구3리 인구감소로 도구1리에 통합(1개리 감) ■ 도구2리의 인구집중 증가로 2개리로 분할(1개리 증) ■ 도구3리 2개반을 도구1리 1개반으로 편입(1개반 감)
홍해읍	60	400	61	424	1	24	■ 삼도부엔빌(875세대) 신축 입주(1개리, 24개반 증)
송라면	22	49	22	49	0	0	■ 반 경계 일부 조정(리반 변동없음)
동계	154	1,033	155	1,055	1	22	○ 증 : 통2, 반 23 ○ 감 : 통1, 반 1
대이동	21	162	21	163	0	1	■ 공동주택 신축으로 5통1반 분반(1개반 증)
중앙동	50	279	50	281	0	2	■ 22통 4반 분반(1개반 증) ■ 23통 2반과 3반 통합, 6반 분반(1개반 증, 1개반 감) ■ 세대수 증가로 신설(1개반 증)
우창동	42	284	42	295	0	11	■ 과소3개통을 2개통으로 조정(1개통 감, 1개반 증) ■ 금호어울림(449세대) 입주로 1통, 10개반 증
장량동	41	308	42	316	1	8	■ 양덕하우스스토리(379세대) 입주(1통, 7개반 증) ■ 39통 상가, 주택 신축 입주(1개반 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전화 : 054-270-2074, 팩스 : 054-270-2070, Email : jcg100@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대이동 란 중 5통1반을 별지와 같이 하고 6통5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중앙동 란 중 21통 1반, 22통 1반, 2반, 4반, 6반을 별지와 같이 하고 7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23통 2반, 3반, 6반, 24통 2반, 5반을 별지와 같이 하고 6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26통 2반, 4반, 7반, 27통 1반을 별지와 같이 하고 33통 6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34통 7반, 35통 4반, 38통 1반, 2반, 5반, 6반, 44통 3반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우창동 란 중 7통 6반부터 8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8통 5반부터 7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8반, 9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9통 1반부터 5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6반, 7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15통 6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42통 1반부터 7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삭제하고 42통 1반부터 10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장량동 란 중 39통 10반, 42통 1반 부터 7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연일읍 란 중 유강7리 2반부터 15반 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동문2리 23반, 유강6리 16반, 17반, 유강7리 16반 부터 20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오천읍 란 중 원2리 1반부터 11반 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원2리 12반부터 28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문덕2리 12반을 별지와 같이 삭제한다.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동해면 란 중 도구2리 1반부터 19반 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도구2리 20반부터 29반까지를 삭제하고 도구1리 6반, 도구3리 1반부터 10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리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흥해읍 란 중 학천1리 4반, 학천3리 1반부터 6반까지, 10반부터 14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학천4리 1반부터 24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리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송라면 란 중 광천2리 2반, 광천 3리 4반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흥해읍 학천리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명	읍 면 동	리 명	관 할 구 역
북 구	흥 해 읍	학 천 리	학천1리, 학천2리, 학천3리, 학천4리 일원

② 「포항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 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2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중 흥해읍 학천리 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구 명	읍 면 명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 정 운 영 리 명
북 구	흥 해 읍	학 천 리	4	학천1리, 학천2리, 학천3리, 학천4리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남구)**

동 명	통 의 칭	반 의 칭	구 역
대이동	5통	1반	대잠동 235 ~ 457, 471 ~ 495, 497 ~ 568, 685
	6통	5반	대잠동 470-1 ~ 5, 470-8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북구)**

동 명	통 의 칭	반 의 칭	구 역	
중앙동	21통	1	대신동 60의6~12, 9~11, 16~19, 81의30	
		22통	1	대신동 9의5,6,8,10~12,14~16,18,24, 10의8,10~20, 23~26
			2	대신동 9의9,17, 961의1, 961의9, 975의15, 976의9,17,25,60, 978의2,17~25, 979의1,3,4,6,7,11~13, 980의4,5,8
			3	현행과 같음
			4	대신동 953, 953의8,10,35, 956의11~17, 959의11~17, 960의20, 961의24, 976의7,8,42~56, 977의1,4,5,7~9, 978의8,10,11
			5	대신동 949의3,5, 950의3,5,7, 951의5,8,9,19,20, 953의5,217~224, 977의3,11
			6	대신동 9의13,11의~17, 15의6~22, 959의26, 960의7~9,11,23,24, 961의7,19,22, 962의4,7,8, 964의22~24, 975의7,8,11, 976의1,5,27,28,37,42,43
			7	대신동 959의1, 960의14,18,19, 961의9,10,20,21, 976의10,11,16,18~20,22~24,31~33,35,40,41
	23통		1	현행과 같음
			2	대신동 78의1,2,3~18,20~28,30
			3	대신동 956의19,20,22,23,27,28,30,32~35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대신동 956의25,26,29,39~42, 953의11~33, 225~240
	24통		2	대신동 75의1~9,15~17,19~24,30,32,41~43,46,50~54
			5	대신동 66의6,8,13,17,20
			6	학산동 93의12,14, 97의3,7, 111의4~7, 112의4,13,15,16, 116의1, 119의2, 120의1, 123의1, 124의1, 126의2,7,9, 127의3,25,26, 128의3

동 명	통 명 의 칭	반 명 의 칭	구 역
중앙동	26통	2	대신동 62의1~6,8,26,28~30,33,35~42
		4	대신동 62의7,13,14,21,25,27,67의1~3,11~17,19
		7	대신동 67의5,8,9
	27통	1	대신동 2의10,11, 60의18~30, 61의1,6~7,19~22
	33통	6	학산동 93의12,14, 97의3,7, 111의4~7, 112의4,13,15,16, 116의1, 119의2, 120의1, 123의1, 124의1, 126의2,7,9, 127의3,25,26, 128의3
	34통	7	학산동 127의33~72,83, 128의1,8~13, 147의8,23,24,31
	35통	4	학산동 219의6,12, 220의6,7,10,11, 221의1~19,23
	38통	1	학산동 127의15,17,19,30,32, 151의2,15,16,18,24, 152의5,8, 153의7,23,156, 168의2,6~9,15,169, 171의1
		2	학산동 92의2,3, 93의3,28,30,32~34, 127의4,14,23, 152의1~3, 153의2,3,5,14~16, 171의3
		5	학산동 154의1,156, 157의2~4, 158의2,4~7 159의1,2, 164의2, 165의2, 166의1, 170의1,2
6		학산동 161의1,162, 163의1, 164의2, 266의3,4, 267의5,268, 268의1, 269의2	
44통	3	항구동30의1,2,31,34~36, 37의6,7,38, 38의1,9~17, 55의6	
우창동	7통	6	우현 118의 6 대궁꿈마을 201~1007
		7	우현 133 영포아파트 101~506
		8	우현 133 영포아파트 107~512, 133의 4 영포주택
	8통	5	우현 126-2 조양전원타운 101-1102호
		6	우현 126-2 조양전원타운 103-1055호
		7	우현 126-2 조양전원타운 106-1057호
		8	우현 126-2 조양전원타운 108-1059호
		9	우현 126-2 조양전원타운 110-811호
	9통	1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1동 101~1701,102~2302,203~2303호
		2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2동 201~2201,102~2302,103~2303호
		3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3동 101~2001,102~2002호
		4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3동 103~2003,205~2005호
		5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4동 101~2001,102~2002,103~2003호

동 명	통 명 의 칭	반 명 의 칭	구 역	
우창동		6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5동 101~2001,102~2302호	
		7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5동 203~2303,105~2305호	
	15통	6	우현 539-1 우현4차신동아파밀리에 401동 101~1501, 202~1502, 103~1503, 105~1505	
	42통		1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1동101-1001호,102-1602호
			2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1동103-2003호,104-2004호
			3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1동105-1705호, 106-1706호 101동 107-1107호
			4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1동 108-1108호,109-1009호
			5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2동101-1001호,102-1602호
			6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2동 203-1703호,104-1504호 102동 205-1805호,206-1806호
			7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3동 201-1201호,102-1602호
			8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3동 103-1503호,104-1304호 103동 105-2505호,106-2506호
			9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4동 101-2501호,102-2502호
			10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4동 103-2003호,104-1904호 104동 105-2005호,106-1206호
장량동	39통	10	양덕 1194 ~ 1210	
	42통	1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1동 201~2502호	
		2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1동 203~2504호	
		3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2동 102~2002호	

동 명	통 명 의 칭	반 명 의 칭	구 역
장량동		4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3동 201~2402호
		5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4동 102~2003호
		6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5동 201~2602호
		7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5동 203~2604호

**【별표 2】 리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남구)**

읍면동	법정 리명	행정 리명	반의 명칭	구 역	
연일읍	동문리	동문2리	23	103번지 연일베르체 201동	
				103-15번지 연일베르체 202동	
				103-16번지 연일베르체 203동	
				103-19번지 연일베르체 204동	
				103-18번지 연일베르체 205동	
	유강리	유강6리	16	594-2번지 유강경성홈타운 301~1104호	
				17	594-2번지 유강경성홈타운 105~808호
	유강리	유강7리	1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1동 101~1504호	
				2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2동 201~1502
				3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2동 103~1504호
4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2동 105~1506호	
5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3동 101~1702호	
6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3동 103~1704호	
7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3동 105~1706호	
8	8	9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4동 101~1702호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4동 103~1704호		



읍면동	법정리명	행정리명	반의명칭	구역
연일읍	유강리	유강7리	10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1동 101~1902호
			11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1동 103~1904호
			12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1동 105~1806호
			13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2동 101~2202호
			14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2동 103~2204호
			15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3동 201~2002호
			16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3동 103~2004호
			17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4동 101~2002호
			18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4동 103~2104호
			19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5동 101~2202호
			20	533-5 유강코아루2단지 205동 103~2204호
오천읍	원리	원2리	1	302 블록 4롯데 부영사랑으로 201동 101호~1306호
			2	302 블록 4롯데 부영사랑으로 202동101호~1204호
			3	302 블록 4롯데 부영사랑으로 203동 101호~1306호
			4	302 블록 4롯데 부영사랑으로 204동 101호~1204호
			5	302 블록 4롯데 부영사랑으로 205동 101호~1204호
			6	302 블록 4롯데 부영사랑으로 206동101호~1204호
			7	302 블록 4롯데 부영사랑으로 207동 101호~1206호
			8	302 블록 4롯데 부영사랑으로 208동 101호~1206호
			9	302 블록 4롯데 부영사랑으로 209동 101호~1304호
			10	302 블록 4롯데 부영사랑으로 210동 101호~1206호
			11	356블럭 1~ 7롯데, 357블록 1~ 5롯데
			12	339블럭 1 ~ 7롯데, 340블록 1~ 13롯데, 354블럭 1~ 10롯데, 355블럭 1~ 8롯데
			13	321블럭 1 ~ 8롯데, 322블럭 1 ~8롯데,, 323블럭 1 ~ 8롯데, 324블럭 1 ~9롯데 336블럭 1~ 10롯데.
			14	303블럭 1 ~ 6롯데, 317블럭 1 ~ 10-2롯데, 318블럭 1 ~ 9롯데, 319블럭 1 ~ 11-2롯데, 320블럭 1 ~7롯데

읍면동	법정리명	행정리명	반의명칭	구역
오천읍	원리	원2리	15	304블럭 1롯데, 315블럭 1 ~ 9롯데, 316블럭 1 ~ 9롯데,
			16	325블럭 1 ~ 8롯데, 326블럭 1 ~ 9롯데
			17	334블럭 1 ~ 7롯데, 335블럭 1 ~ 4롯데, 341블럭 1 ~ 5롯데, 342블럭 1 ~ 7롯데
			18	349블럭 1 ~ 12롯데, 350블럭 1 ~ 4롯데, 351블럭 1 ~ 7롯데, 352블럭 1 ~ 6롯데
			19	360블럭 1 ~ 6롯데, 361블럭 1 ~ 11롯데.
			20	362블럭 1 ~ 3롯데, 363블럭 1롯데, 364블럭 1 ~ 5롯데, 365블럭 1 ~ 8롯데
			21	345블럭 1 ~ 3롯데, 345블럭 1 ~ 2롯데, 347블럭 1 ~ 2롯데, 348블럭 1 ~ 10롯데
			22	332블럭 1 ~ 10롯데, 333블럭 1 ~ 4롯데, 343블럭 1 ~ 4롯데, 344블럭 1 ~ 3롯데
			23	310-1블럭 1 ~ 3롯데, 330블럭 1 ~ 1롯데, 330-1블럭 1롯데, 330-2블럭 1롯데, 331블럭 1 ~ 4롯데
			24	328블럭 1 ~ 7롯데, 329블럭 1 ~ 7롯데
			25	314-1블럭 1 ~ 5롯데, 327블럭 1 ~ 8롯데
			26	305블럭 1 ~ 3롯데, 313블럭 1 ~ 8롯데, 314블럭 1 ~ 8롯데
			27	306블럭 1 ~ 6롯데, 311블럭 1 ~ 3롯데, 312블럭 1 ~ 10롯데
			28	307블럭 1 ~ 4롯데, 308블럭 1 ~ 6롯데, 309블럭 1 ~ 9롯데, 309-1블럭 1 ~ 3롯데, 310블럭 1 ~ 2롯데
동해면	도구리	도구1리	6	274, 275, 316, 425, 832-2, 846, 853, 853-4~853-40, 853-57~58, 853-69~72, 855, 855-2~4, 856, 865-12, 868, 876-1
		도구2리	1	81, 83-1, 634-2~9, 635-20, 637-2~5, 638-8, 638-14, 640-2, 641-1, 641-4, 682, 722-3~722-14, 723-1~723-12, 725-12, 727-1, 729-6, 904-6
	2		573, 576, 647-3, 647-4, 649-5, 6, 650-1~3, 651, 652-2, 3, 654~658, 662-1, 633-1~5, 667, 668-1~3, 672-1, 674~676, 694-4	
	3		산91, 593-1~6, 599-1, 2, 616, 626, 629, 630-1, 632-1~8, 632-14~23, 633-5~11, 635-8, 9	
	4		577-3, 582-1, 584-3, 588-1, 590-6, 592-5~14, 600-17, 601-3~10, 602-17, 602-19, 602-28, 602-30, 31, 602-35, 36, 602-42, 602-48, 602-52, 602-60, 603-2, 3, 73-5, 6, 770-9, 904-20~23, 904-29	

읍면동	법정리명	행정리명	반의명칭	구역	
동해면	도구리	도구2리	5	402-1, 528-4~10, 528-18, 509-7~20, 530, 536-1, 537, 582-3, 585-6, 586-1~8, 587-4, 587-5, 588-2, 602-6, 610-3	
			6	60011~14, 612, - 613-1, 914-7, 700, 773-23, 773-56~59, 774, 774-20, 776, 776-2~5	
			7	602-23, 협성1차 가, 나	
			8	614-4, 614-22, 794, 799-1~23, 801-1, 2, 802-4, 803-4~5	
			9	603-32, 협성2차 1동 101~512호	
			10	603-32, 협성2차 2동 101~516호	
			11	603-32, 협성2차 3동 101~505호	
			12	635, 별장맨션 가동 101~505호	
			13	635, 별장맨션 나동 101~512호	
			14	635, 별장맨션 다동 101~512호	
			15	635, 별장맨션 라동 101~510호	
			16	602-221, 천호골든맨션 101~607호	
			17	협성3차 1동 594, 협성3차 2,3동 101~516호	
			18	별장빌라 A, B동 101~102호, 별장빌라 가, 나동 101~402호	
			19	도구리빙타운 가동 101~402호, 나동 103~404호 도구리빙타운2차 가동 101~402호, 나동 103~404호	
			도구3리	1	9~11, 11-4, 12-1, 12-4, 12-7, 12-21, 13-3, 70-1~2, 694-3~4, 696-1, 697-1, 697-8, 397-12~17, 699-2, 699-6, 699-8, 700, 701-2~3, 702-1, 702-3, 703-1, 703-2, 712-1, 712-2, 903-7, 903-8, 905-9, 905-10
				2	14-4~15, 15, 23-2~6, 691-2, 692-1~14, 687-3
				3	704-1~704-4, 709-1~709-10, 709-15~709-30, 710-2, 714, 717-7, 720, 720-2, 720-3, 722-15
				4	693, 청운현대맨션 101~698호
	5	689, 만서장미맨션 101~507호			
6	720-1, 이화해변타운 101~510호				

읍면동	법정리명	행정리명	반의 명칭	구역
동해면	도구리	도구3리	7	7, 도화아파트 101~606호, 도화상가 101~203, 도화다세대 101~302호
			8	715-4, 수정비취 101~505호
			9	691, 대우세원빌 101동 101~610호
			10	691, 대우세원빌 102동 101~610호

**【별표 2】 리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복구)**

읍면동	법정리명	행정리명	반의 명칭	구역
홍해읍	학천리	학천1리	4	336 ~ 453, 455 ~ 471
			학천3리	1
		2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1동 701 ~ 1211
		3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1동 1301 ~ 2004
		4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2동 101 ~ 609
		5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2동 701 ~ 1209
		6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2동 1301 ~ 1909
		7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3동 101 ~ 508
		8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3동 601 ~ 1204
		9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3동 1205 ~ 2004
		10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4동 101 ~ 611
		11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4동 701 ~ 1211
		12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4동 1301 ~ 1906
		13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5동 101 ~ 806	
14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5동 901 ~ 1606			

읍면동	법정리명	행정리명	반의명칭	구역
흥해읍	학천리	학천4리	1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1동 101 ~ 1902
			2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1동 103 ~ 1904
			3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2동 101 ~ 2002
			4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2동 103 ~ 2004
			5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3동 101 ~ 2002
			6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3동 103 ~ 2004
			7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4동 101 ~ 1302
			8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4동 103 ~ 1304
			9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5동 101 ~ 1302
			10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5동 103 ~ 1304
			11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6동 101 ~ 2002
			12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6동 103 ~ 2004
			13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7동 101 ~ 2002
			14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7동 103 ~ 2004
			15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7동 105 ~ 2006
			16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8동 101 ~ 1902
			17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8동 103 ~ 1904
			18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8동 105 ~ 1906
			19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9동 101 ~ 1902
			20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9동 103 ~ 1904
			21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9동 105 ~ 1306
			22	학천 454, 삼도뷰엔빌 110동 101 ~ 2002
			23	학천 454, 삼도뷰엔빌 110동 103 ~ 2004
			24	학천 454, 삼도뷰엔빌 110동 105 ~ 2006

읍면동	법정리명	행정리명	반의명칭	구역
송라면	광천리	광천2리	2	220~241, 248~251
		광천3리	4	32-21~32-23, 32-29~32-30, 32-38~32-39, 32-42, 32-51, 42~67, 158-1, 189-1~189-88, 202~202-1, 901-13~901-14

### 포항시 공고 제2010-39호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기관·단체에서는 2010.02.01일까지 포항시청 농축산과 (270-2693.4)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1월 12일

###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1. 폐지이유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의 개정·시행('09.11.28)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삭제되어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 3. 관련법령

○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의 농지관리위원회 관련조항 삭제

- (개정 제9721호 2009. 5.27)
- 농지법 시행령 제61조부터 제69조까지의 농지관리위원회 관련조항삭제  
(개정 제21848호 2009.11.26)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0 - 1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소로2-401호선 외 3개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86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 1. . .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4-28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시설)
  - 명 칭 : 포항디.비벨리스호텔 신축에 따른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정비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1-7번지 광진빌딩 5층.
  - 성 명 : (주)달봉씨오엔 대표이사 김용구
4. 사업계획 내용
  - 도로개설 L=73m, B=6~8m
  - 도로정비 L=188m, B=3~4m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포항시 남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주소.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송도	254-280	임	12,796	486		포항시			
2	송도	533-45	잡	3	3		국 (재무부)			
3	송도	254-22	대	1,540	40		포항시			
4	송도	254-43	대	70	52		국 (재무부)			
5	송도	254-44	대	484	2		포항시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조서

[포항시 남구]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송도	254 -280	점포	블록 칼라시트	247㎡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4-348	정진홍			
		254 -348	점포	판넬 칼라시트	25㎡					
			화단	벽돌	5㎡					
			계단	목재	11㎡					
			포장	콘크리트	11㎡					
			담장	블록	3.5m					
			담장	돌담	3.7m					
			간판	철재	1식					

# 공 고

포항시 공고 제 2010-31호

###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주민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총수 및 연서대상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1월 8일

- 다 음 -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주민총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계	19세 이상의 주민 중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주민등록자	국내거소신고자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395,003	394,719	217	67	3,951

포항시 공고 제 2010-35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포항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1월 8일

- 다 음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비고
계	19세 이상의 주민 중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주민등록자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 관리법상 영주 의 체류자격 자)	
395,059	394,719	217	123	

포항시 공고 제 2010-36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5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3항에 의거 2010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소

2010년 1월 8일

- 다 음 -

- ◇ 포 항 시 장 - 불임참조
- ◇ 포항시의회의원 - 불임참조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및 서명인수(시장)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외국인 포함)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비 고
		최소기준	15/100 산정수	
계	394,786			10개 읍면동 이상에서 읍면동별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15/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포 항 시	구룡포읍	9,424	1,414	
	연일읍	24,943	3,742	
	오천읍	33,692	3,948	
	대송면	4,891	734	
	동해면	9,891	1,484	
	장기면	4,986	748	
	대보면	2,351	353	
	상대동	24,639	3,696	
	해도동	21,293	3,194	
	송도동	15,980	2,397	
	청림동	6,092	914	
	세철동	2,896	434	
	효곡동	21,025	3,154	
	대이동	14,271	2,141	
	흥해읍	28,551	3,948	
	신광면	3,005	451	
	청하면	5,178	777	
	송라면	2,764	415	
	기계면	5,030	755	
	죽장면	2,747	412	
	기북면	1,294	198	
	중앙동	16,995	2,549	
	양학동	15,515	2,327	
	죽도동	19,418	2,913	
	용흥동	21,465	3,220	
	우창동	20,768	3,115	
두호동	20,310	3,047		
장량동	26,354	3,948		
환여동	9,018	1,353		
			59,218	

## 주민소환 청구권자 및 서명인수(시의원)

지역선거구	읍면동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외국인 포함)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비 고
			최소 기준	20/100 산정수	
	<b>계</b>	<b>394,786</b>			
가 선거구	흥해읍	28,551	5,711	5,711	
나 선거구	<b>계</b>	<b>20,018</b>		4,004	2개이상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신광면	3,005	201		
	청하면	5,178	201		
	송라면	2,764	201		
	기계면	5,030	201		
	죽장면	2,747	201		
다 선거구	<b>계</b>	<b>56,140</b>		11,228	1개이상 동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우창동	20,768	562		
	장량동	26,354	562		
	환여동	9,018	562		
라 선거구	<b>계</b>	<b>40,704</b>		8,141	1개이상 동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중앙동	16,995	408		
	죽도동 (구. 죽도1동)	3,399	408		
마 선거구	<b>계</b>	<b>52,999</b>		10,600	1개이상 동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용흥동	21,465	530		
	양학동	15,515	530		
	죽도동 (구. 죽도2동)	16,019	530		
바 선거구	<b>계</b>	<b>46,758</b>		9,352	1개이상 동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상대동 (구. 상대2동)	9,485	468		
	해도동	21,293	468		
사 선거구	<b>계</b>	<b>50,450</b>		10,090	1개이상 동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상대동 (구. 상대1동)	15,154	505		
	효곡동	21,025	505		
	대이동	14,271	505		
아 선거구	<b>계</b>	<b>16,761</b>		3,353	1개이상 읍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구룡포읍	9,424	168		
	장기면	4,986	168		
자 선거구	<b>계</b>	<b>29,834</b>		5,967	
	연일읍	24,943	299		
	대송면	4,891	299		
차 선거구	오천읍	33,692	6,739	6,739	
카 선거구	<b>계</b>	<b>18,879</b>		3,776	1개이상 면동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동해면	9,891	189		
	침림동	6,092	189		
	제철동	2,896	189		

포항시인사위원회공고 제 2010 -1호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2010년도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2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내역**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원	담당업무	비고
시각디자인	전임 “다” 급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 홍보물의 디자인 심의 및 개발 (빌보드, 인쇄물, CF 동영상 등)</li> <li>각종 홍보물의 가이드라인 구축</li> </ul>	
건축	시간제 “가” 급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에 부합하는 디자인 개발</li> <li>디자인 방향 제시로 작품성 제고</li> <li>건축 초기단계 적정한 과업방향 설정</li> </ul>	

**2. 채용 (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항목의 요건을 갖춘 자

○ 연령 및 거주지

- 연 령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 제한 없음

○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기 준
시각디자인 (전임 “다”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한자</li> <li>▪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li> <li>▪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li> <li>▪ 7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li> <li>▪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li> </ul> <p>※ 전공분야 : 시각디자인 관련 학과                      ※ 경력분야 : 광고기획사, 기업체 홍보실, 시각디자인 전문업체 등</p>
건축 (시간제 “가”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li> <li>▪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자</li> <li>▪ 학사학위를 취득 후 7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li> <li>▪ 1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li> <li>▪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li> <li>▪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부문의 기술사자격을 취득한자</li> </ul> <p>※ 전공분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등                      ※ 경력분야 : 건축설계 및 디자인 등</p>

**3. 채용 (계약) 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 ※ 업무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내 연장 가능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5. 응시원서 접수**

- 접 수 기 간 : 2010. 1. 20(수) ~ 1. 22(금) 18:00까지
- 원서 접수처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 054-270-2081)
- 접 수 방 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6. 시험일정**

- 서류합격자 발표 : 2010. 1. 27(수),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 면접시험 일시 : 2010. 1. 29(금),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2. 3(수),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4cm) 2매
    - 응시수수료 : “가” 급은 10,000원, “다” 급은 7,000원 상당의 포항시 수입증지 부착
  - 이력서 1부 (학력, 자격, 경력, 상훈 등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매 이내)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 (최근 5년이내 잔출입 사항 및 남자는 군 경력사항 기재된 것)
  -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8. 보수 및 복무

- 연 봉
  - 시각디자인 분야(전임 “다” 급) : 31,167천원
  - 건축 분야(시간제 “가” 급) : 37,790천원(근무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도 수당 지급
- 근무시간
  - 건축 분야(시간제 “가” 급) : 주 35시간 이하
- 복 무
  - 기타 복무사항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을 준용

### 9.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원서는 공고문의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면접시험장에 참석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054-270-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포항시홈페이지([www.ipohang.org](http://www.ipohang.org))에 공고 또는 개별통지 합니다.

# 응 시 원 서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응시번호		응시분야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명	(한 글)	주민등록 번호	-				
	(한 자)						
주소	(전 화) (휴대폰)						
학 력	부 터	까 지	학 교 명	전 공 학 과		학 위 명	
자격 면허	취득일자	종 별	병 역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주 요 경 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포항시수입증지 "가" 급 : 10,000원 "다" 급 : 7,000원	귀 시의 ( )분야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10 년 1 월 일 출 원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 시 표	성 명	한 글	※응시번호		사 진 (2) 위와 동일사진  (3cm×4cm)
		한 자	응시분야		
	주민등록번호		-		
2010 년 1 월 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① **응시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분야" 를 기재
  - ② **전화** : 상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휴대폰 등)
  - ③ **학 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졸업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공학과와 학위명을 정확히 기재 (기타 재학수료 등의 경우는 별도 구분 기재)
  - ④ **주요경력** : 당해분야 경력증명서 제출한 경력만 인정
  - ⑤ ※ 표시가 되어 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 ⑥ 수입증지란에는 “가” 급은 10,000원 “다” 급은 7,000원 상당의 포항시 수입 증지를 첨부 (포항시청 1층 민원실에서 판매)





#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 성 명 :

2010. 1.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예)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향후 업무수행 계획,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